

[참고] 유해성시험자료 사용료 및 행정수수료

① 사용료

○ 국내등록용 목적

사용단위		사용료	제출자료
협업체		유해성시험자료 취득금액의 30%	협업체 목록
기업	소상공인	유해성시험자료 취득금액의 3%	소상공인 확인서
	그 외 기업	유해성시험자료 취득금액의 5%	-

○ 국외등록용 목적

- 기업수 1 ~ 5개소 : 유해성시험결과 취득금액의 30%
- 기업수 6 ~ 30개소 : 기업수 × 유해성 시험 결과 취득금액의 5%
- 기업수 31개소 이상: 유해성 시험 결과 취득금액의 150%

◎ 유해성시험자료 사용료 ⇒ 한국환경공단에 문의

- 사용목적(국/내외 등록), 사용단위(협업체/기업) 정보 제출

※ 문의 시에는 시험자료별 사용료가 아닌 **총 사용료**에 대해서만 안내

② 수수료

○ 20,000원 (중기업은 10,000원, 소기업은 4,000원)

※ 「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6조